

## 복지위원회 규정

제정 2000.03.  
 개정 2006.06.  
 개정 2011.03.02.  
 개정 2012.03.01.  
 개정 2014.06.01.  
 개정 2017.01.09.

**제1조(목적)** 본 위원회는 학생 및 교직원의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위원회는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스쿨(학과)과 담당부서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학생서비스센터장, 교육지원처장, 관리센터장, 기숙사관장을 당연직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서비스센터장이 맡는다.

**제4조(기능)** 본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구내식당, 매점, 서점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 통학버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장애학생과 다문화가정 학생편의 및 복지에 관한 사항
4. 기숙사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학생지원활동의 평가 및 개선사항 검토
6. 기타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제7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사무)** 본 위원회의 제반 사무는 학생서비스센터 또는 교육지원처에서 관리한다.

###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이 규정은 200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이 규정은 201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이 규정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이 규정은 2017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